

오산시 반려동물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

제정 2022년 5월 13일 규칙 제923호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오산시 반려동물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이용료의 징수) 「오산시 반려동물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6조에 따른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이 용 료(제2조 관련)

구분	기준	대상	기본요금(원)	추가요금(원)	
동물 놀이터	이용권(4시간) (10:00~14:00) (14:00~18:00)	사람 1명 + 반려동물 1두	5,000	사람 (추가 1명당)	2,000
				반려동물 (추가 1두당)	3,000
	연간이용권	사람 1명 + 반려동물 1두	200,000	사람 (추가 1명당)	50,000
				반려동물 (추가 1두당)	50,000